주주간 계약서

우리가 남이가? 응, 우리 남이야. 부부 사이도 님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남이지 않니? 우리 사업하면서 주주로 만난 것뿐이야. 앞으로 멋지게 잘 지내 보자고.

주주간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작성 안 해도 될 계약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더 낫고, 안 좋은 내용의 계약은 아예 체결안 하는 것이 나은데, 그래도 체결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를 문서화시켜서 남겨 두는 게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주주간 계약도 일종의 동업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무슨 소리냐? 주주간에 무슨 동업이냐고 하시겠지만,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인재를 꼬시는데 이 때 같이 사업을 할, 또는, 사업에 도움을 받을 새로운 주주와 작성하는 것이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내가 주식까지 주면서, 지분까지 주면서 영입했는데, 열심히 안 하면 곤란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동업 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주주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주주간에 “이런 일을 같이 잘 해 보자. 저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 ]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 (이하 ‘을’이라고 한다) 은 [ ]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잘 운영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사자(‘갑’ 과 ‘을’ 을 각 당사자라고 하거나 둘 모두를 칭할 때는 당사자들이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계약서(합의서, 약정서, 각서 명칭 불문) 제일 처음에는 이 계약서를 체결한 목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와 을순이가 주주이고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김밥가게라면, 이에 맞게 위 빈칸에는 ‘갑돌이, 을순이, 주식회사 김밥가게’ 라는 단어가 들어 가면 됩니다.

제2조(경업 금지)

1. 당사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대상회사와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경영하거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 할 수 없으며, 해당 법인의 지분을 어떠한 형태로도 취득할 수 없다.
2. 위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 ]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의 경우 주주간 동업약정서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껏 주주가 되게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뒤로 다른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하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눈 못 팔게 서로 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강하게 위약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서로 간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딴 짓을 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근속 의무)

1. 주주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 년간 대상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이유를 불문하고, 위 제1항의 의무를 다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각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비율로 액면가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는 대상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도 근속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주주이니 회사와 운명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 의무 근무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회사를 나가게 되면, 자기 주식을 액면가로 토해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주인들이 같이 일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켜야지, 중간에 나가 버리면 국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4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대상회사 주식 및 본 주주간 계약에 의한 권리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주주간 계약은 인적인 요소가 중요한 계약입니다. 너 아니면 내가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컷 같이 대상 회사 잘 운영해 보자고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황당하겠죠?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못 넘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1.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각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비율로 액면가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권리 의무를 넘기지 말라고 단단히 못 박아 두었는데도 넘기게 되면 강하게 제재를 받아야 겠지요? 너 몰래 권리 의무 넘기기로 했어. 그냥 너 나가. 아웃이야. 주식은 액면가로 처분하고 나가라는 조항을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제5조(우선 매수권)

1. 당사자가 본 계약 기간 종료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자는 양도대상 주식의 수, 가격, 매각방법, 기타 주요조건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다른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 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내가 주식을 팔든 말든 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주였으니 서로 좀 더 배려를 해 주자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주식 팔거야? 그럼, 이왕 팔거 나한테 팔아. 원래 우리 같은 주주였잖아.” 이런 맥락 입니다.

1.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이면 살지 말지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1. 위 제2항의 기간 내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을 인수 거절을 통지한 경우 양도 통지를 한 당사자는 양도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이 때, 서면 통지한 양도조건보다 유리한 통지로 제3자에게 매각 할 수는 없고,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하려는 경우 다시 다른 주주에게 조건을 변경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주주가 주식을 안 산다고 하면, 제3자에게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판다고 통지해서 거절하게 만들고서는 제3자에게는 덤핑가로 넘기면 안 되겠죠?

제6조(계약 기간)

본 주주간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이다. 단, 계약 종료일로부터 [ ]개월 전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기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기간은 의무 근속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대상회사를 운영 하다가 너무 죽이 잘 맞는데, 계약 기간 만료되었다고 헤어지게 되면 너무 아쉽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도 넣어 두면 좋습니다.

제7조(계약 해지)

1.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업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를 상호 서면 합의하는 경우
3.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당사자에게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의무 불이행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은 경우를 각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시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적어 두었습니다.

1. 전 항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귀책 사유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이 때 계약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지의 책임있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토해내는 게 맞겠죠?

제8(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히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겠지요?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도 액면가로 매각하는 정도의 패널티는 부담해야 겠지요?

제9(계약의 변경)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중요한 계약인 주주간 계약을 아무렇게 변경할 수는 없겠죠?

서로 간에 서면 합의로만 변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10조(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한 상대방에 대한 개인 정보 등 모든 정보, 대상 회사와 관련된 정보(그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를 모두 비밀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자신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금 [ ]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같이 대상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혹은 누군가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부터 해서 대상 회사에 대한 각종의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정보들은 비밀로 취급해야겠지요?

제11조(완전한 합의)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구두 합의 한 내용 혹은 서면 합의 내용 등을 본 계약으로 모두 대체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주주간 계약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통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구두 합의도 하고, 때로는 서면 합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합의가 많습니다. 그 때, 딱 중심이 되는 최종 합의를 만들어 두어야겠죠? 지금까지 합의는 다 됐고. 이걸로 끝.

제12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분쟁이 발생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호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잘 되자고 시작 했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 가야죠.

당사자 사이에서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성명 옆에 각 서명 및 날인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서명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각 첨부하고, 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또는, 리걸팀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 ] 년 [ ] 월 [ ] 일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